

이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제정 2006· 8· 14 조례 제 632호
 개정 2007· 4· 27 조례 제 659호
 일부개정 2017· 3· 7 조례 제1298호
 (이천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 9· 28 조례 제1424호
 (이천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 3· 22 조례 제1685호
 전부개정 2022· 12· 28 조례 제1892호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이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다만, 운영비의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에 한한다)
3. 새마을회원의 교육훈련, 선진지 견학 및 연찬회
4. 읍·면·동 새마을회원의 회의참석수당
5. 새마을운동에 대한 상사업비 및 포상금
6.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12·28 조례 제189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